

## SHOE 마크 제품인증

### 인증마크의 사용과 승인 받은 인증을 인용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 1. 표시 및 광고 등 의뢰자의 의무와 권리

- 1.1 의뢰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SHOE 마크를 표시하고, 당해 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광고할 수 있다.
- 1.2 SHOE 마크는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제작하여 제공한 소정의 증지로 서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의뢰자가 증지를 직접 제작하여 표시하거나 개개의 물품 또는 단위포장에 SHOE 마크를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3 의뢰자는 인증기관에게 제작 요청한 소정의 인증서를 사무실 등에 게시할 수 있다.
- 1.4 의뢰자는 인증제품에 한하여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의 사전 승인 후 SHOE 마크 인증 표시의 작도기준(첨부 1)에 따라 축소 및 확대하여 이를 홍보 및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 1.5 의뢰자는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허위 또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인증에 관한 어떠한 표명도 해서는 안 된다.
- 1.6 의뢰자는 구매자가 현혹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도록 관련 제품인증마크 및 제품표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1.7 품질책임자는 광고, 카탈로그 등에서 제품인증시스템에 대하여 잘못된 주장과 부적절한 언급, 제품표시 인증서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면허, 인증서 또는 마크의 오용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시정조치, 인증취소, 위약에 관한 내용서의 발행과 필요하다면 기타 법률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 2. SHOE 마크 사용 및 의뢰자 표시 요건

- 2.1 의뢰자가 SHOE 마크 인증을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과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체제품에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당사는 SHOE 마크 인증업체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전체제품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였다는 방식의 홍보 등을 포함한다.
- 2.2 의뢰자는 SHOE 마크를 인증기관이 추구하는 인증의 목적 외 그 어떠한 수단으로서, 또는 인증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할 용도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3. 홍보물 등에 SHOE 마크 표시방법

- 3.1 의뢰자는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SHOE 마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2 의뢰자는 인증받은 날로부터 인증받은 인증범위 내에서 SHOE 마크가 표시된 제품 및 홍보물 등을 배포할 경우에만 인증받은 의뢰자임을 표시할 수 있다.
- 3.3 인증표시를 하려는 제품이 인증범위를 벗어난 경우 SHOE 마크 및 인증을 획득한 업체라는 어떠한 방식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언급하지 않아야 하며, 여기에는 동사향을 암시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 3.4 샘플채취 시 봉인한 심사대상제품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증지(꼬리표 또는 스티커 등)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SHOE 마크 및 의뢰자 표시 오용 시의 제재조치

- 4.1 의뢰자가 SHOE 마크 또는 의뢰자 표시를 함에 있는 이를 오용할 경우 인증의 확대, 만료, 축소, 정지 및 취소절차서(FIPC-QP-12)에 따라 경고, 표시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4.2 인증을 획득하지 아니한 자, 표시정지처분을 받은 자(표시정지처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에 대한 보완 확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는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SHOE 마크를 사용한 때에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형사고발할 수 있다.

첨부 1. SHOE 마크 도안

